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보 도 자 료		 희망의 땅 기회의 바다 국토해양부
배포 일시		2010. 11. 23(화) 총 8매(본문 2, 붙임 6)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 자	• 과장 김정렬, 사무관 송윤석, 주무관 하승철 • ☎ (02)2110-8477, 8861, 8164	
보 도 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휴양 · 지역특화산업 육성 2015년까지 6,473억원 투입, 2개 권역 개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 24일자로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 42.36㎢(군면적의 11.0%)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10년 1월 고령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 개발계획은 대가야의 문화자원 활용, 온천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관광휴양산업과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2015년까지 총 6,473억 원이 투입되며, 개발과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령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다산 레저 · 산업복합지구와 성산 물류 · 산업복합지구 2개 권역으로 총 12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 * 투자규모(6,473억원) : 국비 407억, 지방비 6억, 민자 6,060억

- 고령 북부에 위치한 다산 레저·산업복합지구(25.36km²)에는 태성 아이리스 리조트 타운,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월성 일반산업단지,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 고령 남동부권인 성산 물류·산업복합지구(17.0km²)에는 성산고탄 온천지구, 득성 물류유통단지, 성산 일반산업단지, 인안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
- 정부는 이러한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사업 등 3개 연계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가야 르네상스 고령”의 가치를 내세운 고령군의 문화관광산업분야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령군의 산업구조를 관광 및 기타 서비스산업과 첨단 제조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 1】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 고령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 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참고 1】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요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고령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

- 위 치 : 고령군 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일원(3면 14리)
- 면 적 : 42.36km²(경상북도의 0.2%, 고령군의 11.0%)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면적(km ²)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km ²)	편입행정구역	
고령군	384.06	42.36	14개리	
다산면	45.90	25.36	송곡리, 벌지리, 나정리, 월성리, 노곡리 (5개리)	• 태성아이리스 리조트 타운 •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 월성 일반산업단지 • 노곡리 향부자마을 생산기반조성 •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
성산면	48.45	10.10	득성리, 삼대리, 고탄리, 어곡리, 오곡리, 강정리 (6개리)	• 성산 고탄 온천지구 • 성산 일반산업단지 • 득성 물류유통단지 • 인안 일반산업단지
개진면	39.50	6.90	인안리, 생리, 부리 (3개리)	• 성산·인안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
그 외지역	250.2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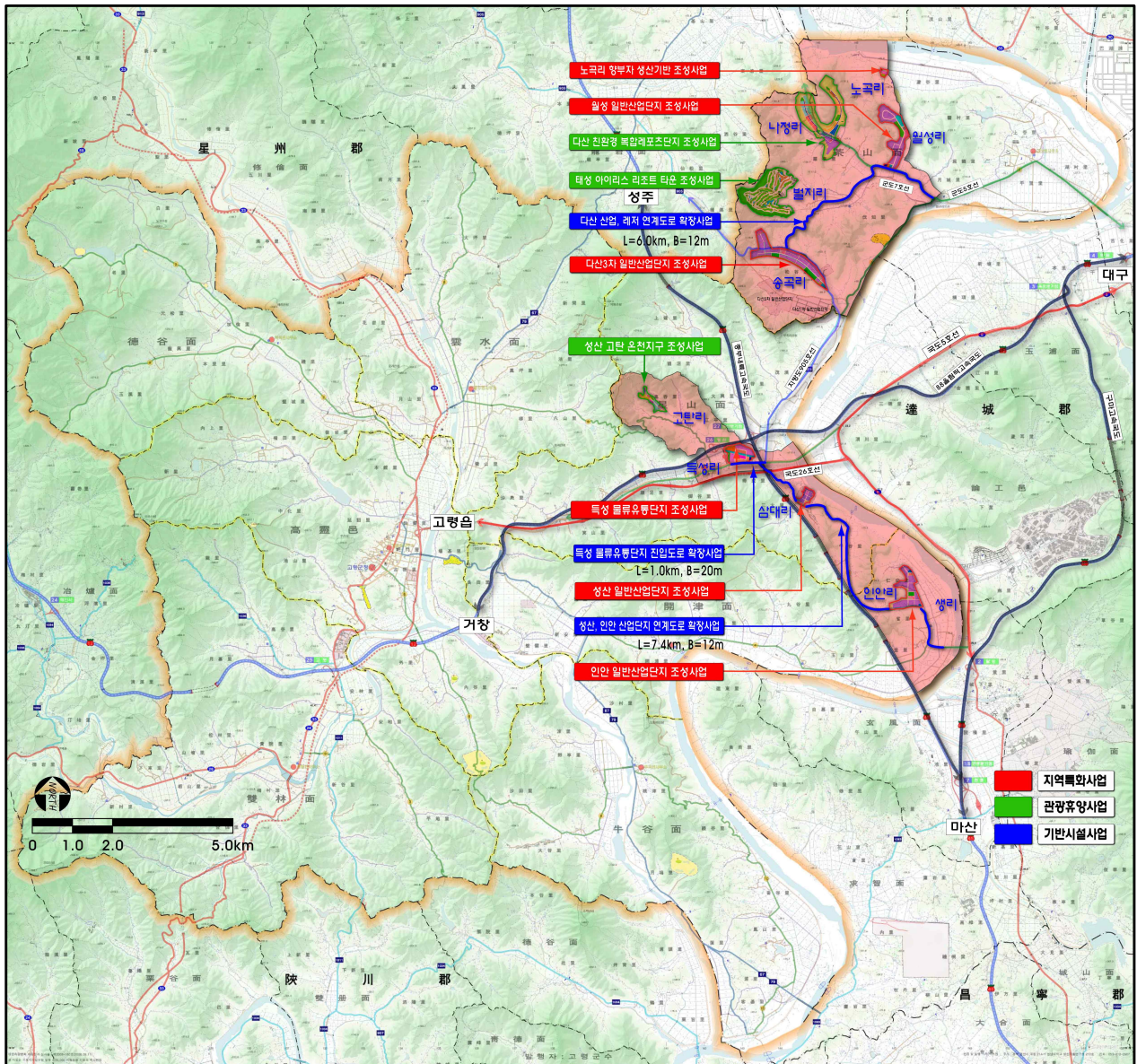
【참고 2】

고령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부문별 사업		위치	사업량 (m ² , km)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국비	지방비	민자
계		-	A=4,692,042m ² L=14.4km B=12~20m	-	6,473	407	6	6,060
A. 관광휴양사업			2,382,698		2,079	-	-	2,079
1	태성 아이리스 리조트 타운 조성사업	다산면 벌지리 일원	1,239,955	골프장, 콘도미니엄, 연수원	1,019	-	-	1,019
2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나정리 일원	1,097,185	위락시설, 생태체험, 스포츠테마, 숙박시설, 체육시설, 친환경주거, 부대복리시설 등	930	-	-	930
3	성산 고탄 온천지구 조성사업	성산면 고탄리 일원	45,558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공원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	130	-	-	130
B. 지역특화사업			2,128,274		3,987	-	6	3,981
1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송곡리 일원	708,779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저류시설, 공원	1,704	-	-	1,704
2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월성리 일원	511,086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저류시설, 공원	700	-	-	700
3	성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성산면 삼대리 일원	113,000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250	-	-	250
4	득성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성산면 득성리 일원	293,340	공동집배송, 화물터미널, 상류, 지원, 공공시설 등	500	-	-	500
5	인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진면 인안리 일원	474,519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이주자 택지 등	825	-	-	825
6	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 조성사업	다산면 노곡리 일원	27,550	가공공장 및 창고, 전시 및 판매장, 재배 체험장 등	8	-	6	2
C. 기반시설사업			L=14.4km B=12~20m A=181,070m ²		407	407	-	-
1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사업	다산면 월성리~벌지리 ~송곡리 일원	L=6.0km B=12m A=72,000m ²	연계도로 확장 (B = 6~7m→12m)	141	141	-	-
2	성산·인안일반산업 단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성산면 득성리~삼대리	L=7.4km B=12m A=88,490m ²	진입 및 연계도로 확장 (B = 6~7m→12m)	173	173	-	-
3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성산면 득성리	L=1.0km B=20m A=20,580m ²	진입도로 확장 (B = 15m→20m)	93	93	-	-

【참고 3】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44개 지구, 62개 시·군 지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사업기간	1996-2015	1997-2015	1998-2015	2000-2012	2002-2014	2008-2017	2008-2018
강 원 도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단양·괴산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서천·금산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남원·김제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경상북도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청도·군위
경상남도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합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거창

○ 균형개발형

-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